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3059
----------	------

2022. 03. 3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2. 1. 21. 김창원 의원 발의 (2022. 1. 25. 회부)

2. 제안이유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3. 주요내용

- '육안점검'을 '맨눈점검'으로 함(안 제4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6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맨눈점검 ----- ----- ----- ----- -----

4. 검토의견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르면 ‘육안(肉眼)’은 정비 대상 용어으로써 ‘눈, 맨눈, 시각, 육안(맨눈)’으로 순화하여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육안	肉眼	눈, 맨눈, 시각, 육안(맨눈)
육안으로	肉眼	눈으로, 직접 눈으로
육안표본검사실	肉眼標本檢査室	맨눈표본검사실

※ 출처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제10판(2021.12.) 별책 부록. 정비 대상 용어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연락처	02-2180-8216
이메일	cjh1786@seoul.go.kr